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61회 임시회

검토 보고서

2023. 3. 30.(목)

| 검 토 안 건 | 발 의 |
|---|-----|
|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구청장 |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장홍용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
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장홍용)

1. 제안경위

- 제안자 : 마포구청장
- 제안일 : 2023. 3. 17.
- 회부일 : 2023. 3. 22. (의안번호 : 23-46)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
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- 변경된 단체명칭 현행화

3. 주요내용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조항
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
 - 제9조 조문명 변경
(현 행) 제9조(위원회 설치)
(개정안) 제9조(처우개선위원회)
 - 제9조제1항 처우개선위원회 의무설치에 대한 근거 ‘법
제3조의2’ 명시, 위원회 자문 기능을 심의 기능으로 변경

- 제9조제2항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사항 신설
- 제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함.
- 변경된 단체명칭 현행화(제9조제3항)
(현 행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
(개정안)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 : '23. 2. 9 ~ '23. 3. 2(제출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,
- 주요내용으로는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」 조항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, 처우개선위원회 의무설치 및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으며, 시행규칙을 삭제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- 다만,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이 2022. 6. 22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후 상위법령 개정 시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9조(위원회 설치) ① 구청장은 <u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p> <p>2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</p> | <p>제9조(처우개선위원회) ① 구청장은 <u>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</p> <p>2.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</p> <p>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.</p> |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삭 제>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조항 신설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이름 |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최자운 |
| 연 락 처 | 02-3153-8832 |

참고 자료

1. 관련법령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7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제3조의2(처우개선위원회)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

2. 제3조 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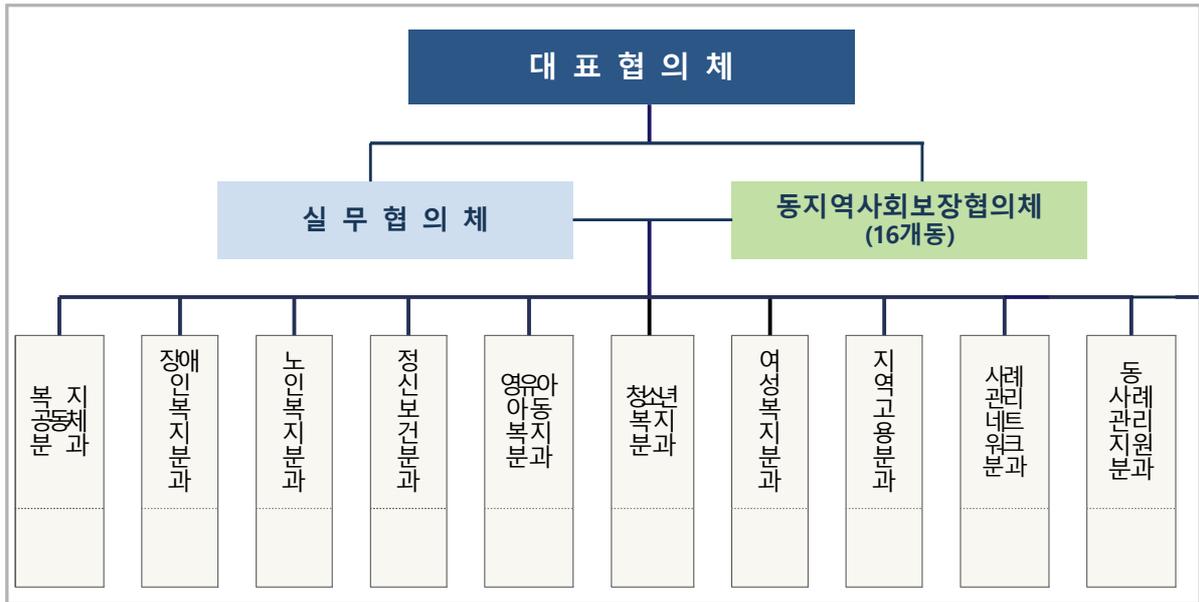
3.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12. 21.]

2.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



3.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

| 구분 |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(비영리단체) |
|---------------------|--|
| 관련법령 등 | 1.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.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3.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운영규정 |
| 설립형태 | 비영리단체 |
| 목적사업 | 1. 지역의 사회보장과 서비스 제공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위한 활동 2.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, 시행, 평가 등 심의·자문 |
| 조직구성 | 1. 대표협의체(22명) : 공공위원장: 구청장 / 민간위원장: 이성환 2. 실무협의체(28명) : 위원장 : 하강택 3. 실무분과: 11개 분과, 154명 4.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:16개동,234명 |
| 운영재원 | 보조금 |
| 예산 (23년도 보조금) | 총 130,287천원 1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.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|
| 운영인력 (사무국직원) | 1명(사무국 간사) 1.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심의·자문 2. 지역사회보장, 사회복지지표 조사 3.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.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등 |